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-8 / 전송 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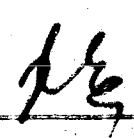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법무 11010-709

시행일자 1997. 4. 4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홍		
법 제 계 장	김철수		
기안	김철수		
	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예규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예규 시보게재

예규제 131 호

1.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10(목).

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31호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기술심사담당관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10(목).

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31호(생략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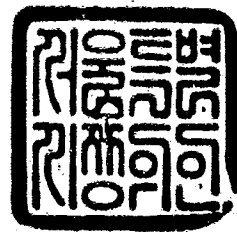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7년 4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조

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

우리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와 토질 등에 관한 시험업무는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(서울특별시에규 제590호 : '94. 6.96)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'97. 1.15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3368호)가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
조례 제3368호 : '97. 1.15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411 / 전송 731-6561
 처리부서 기술심사담당관(언급매점 건물 3층) / 담당 영태경

문서번호 기심 58800 - 384

시행일자 1997. 3. 31


수신 법무담당관

신결	3		지	
접	일자		시	
수	번호	250	결	계정 104
처리과			채	입반계정 3
담당자			공	부계정 31
			행	심사계장 2

제목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안 통보

1. 우리시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와 토질등에 관한 시험업무는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(예규 제590호 : '94. 6. 30)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'97. 1. 15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(조례 제3368호)를 제정·공포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을 불입과 같이 폐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기술심사담당관 

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발령

- 발령대상 : 1건(개정)
- 발령일 : 1997. 3. 25(화)
- 주관부서 : 회 계 과
- '97. 1. 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 위한 특례규정이 '96. 12. 31 개정됨에 따라 기술용역에대한 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·보완 하려는 것임.
- 예비예정가격의 결정 및 공개금액을 정부고시금액인 10억원에서 1.51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, 낙찰자결정 대상금액 및 낙찰율을 현행 100분의 88이상에서 100분의 90이상으로 함.